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8 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1999년 행정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주민들 스스로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이 변모하여 왔음.
- 나. 인천광역시에서는 그 취지에 맞추어 주민자치센터의 북카페 조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경연대회 개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 다. 지원근거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 사무의 구분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지원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미비하여 지원책 부족 및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불분명과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 라.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안 제1조, 제3조)
-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단체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단체에 대한 지원방법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3,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단체”라 함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이를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시민 등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 공익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의 범위)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주민센터의 북카페 조성 등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3.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평가
4. 타 시·도와의 주민센터 교류사업
5.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6.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7.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군수·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단체(이하 “활성화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의한 주민센터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활성화단체 지원) ① 시장은 활성화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타 시·도와의 주민센터 교류사업
3.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4.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5.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활성화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결산보고 등) 군·구 및 활성화단체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해당연도의 사업 추진실적을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위원 및 시민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주민센터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준용) 보조금 지급 관련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 치 구 사 무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 시·군·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조정·지도 및 조언	1)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 시설의 운영·지원 3) 주민복지 상담 4)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 중 략 -	
다.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정의) ① 삭제 <2011.9.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공금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1.9.6>

③법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을 위한 비용 지출
 - 주민자치센터내의 북카페 조성 등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 타 시·도와의 주민자치센터 교류사업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조직 운영 경비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정조례에 명시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전체 추진

나. 추계 결과

- 총소요액 : 304,000천원(신규경비 21,000천원)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기지원액	향후 소요액	추가소요액
환경개선	북카페 조성	221,000	221,000	
교류사업	박람회참석	5,000	5,000	
홍보,공유	소식지제작	27,000	27,000	
경연대회	시 자체	10,000	10,000	
	전국대회출전	5,000	5,000	
역량강화	워크숍	15,000	15,000	
조직운영	사무실임차		6,600	6,600
	운영비		2,400	2,400
	인건비(1인)		12,000	12,000
계		283,000	304,000	21,000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소요액(백만원)	1,520	304	304	304	304	304	

※ 추가 소요액은 매년 21,000천원

4.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

5. 작 성 자

기획행정위원회 이 용범 의원